

2026년 벤처기업 육성사업(벤처나라 입점지원) 추가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지역 유망 창업·벤처기업의 우수한 기술력 및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 시키고,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6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I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기술력과 품질이 우수한 벤처 및 창업기업(7년 이내) 제품을 조달청 벤처나라에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추천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공공구매 판로 확대

지원대상

- 제주지역 내 사업장(본사)을 소지한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지원규모

- 조달청 벤처나라 입점지원: 2개사(기업 당 2백만원)

벤처나라

- 운영 및 관리: 조달청
- 목적 및 내용
 - 벤처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상품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판매하고자 하는 전용 상품물
 - 구매자(대한민국공공기관)와 판매자(벤처·창업기업)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가 가능한 ‘오픈마켓’
- 상품물 홈페이지: <http://venture.g2b.go.kr>
- 등록상품 지원내용: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서 및 인증마크 부여, ‘벤처나라’에 상품소개 페이지 제작 및 등록, ‘나라장터’와 연계 공공기관의 구매 절차 지원



[전국 벤처나라 등록 상품 현황, 2025년 12월 기준]

구분	지원내용
기초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나라 개요 및 입점(등록)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나라 이해도를 돕기 위한 입점절차,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평가 진행방식, 궁금증 해소 등 • 벤처나라 상품등록 및 판매노출을 위한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신청서, 상품설명서 보완 등 • 조달청 심사(적격검토, 구매업무심의회 등) 소명자료 준비 등 • 기타 벤처나라 등록 및 절차에 관한 기초 사항 컨설팅
실무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나라 이용 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가자격 등록, 물품목록 등록방법 등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이용 및 실무 등 • 물품목록 등록 절차 및 목록정보시스템 활용 등 • 기타 벤처나라 이용에 관한 실무 사항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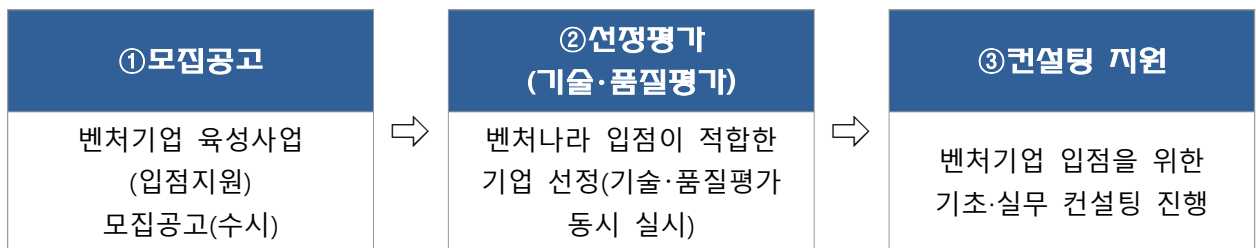
- (컨설팅 비용) 벤처나라 입점 등에 따른 개별 컨설팅 지원비용
 - 집합컨설팅은 개별컨설팅 선정 시 자동 지원
 - (지원금 예시) 지원금 최대 2,000,000원(기업 현금대응자금 “없음”)

< 입점지원 지원금 지급기준 >

구분	지원내용
지급기준 (개별컨설팅 기준)	• 기업당 최대 8회(1회 컨설팅: 250,000원)

- (지원방법) 벤처나라 상품등록 및 판매노출을 위한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신청서, 상품설명서 작성 등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 지원방법 >



III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온라인 신청 시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6조에 따른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신청 제외 대상

- ▶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
- ▶ 해당 업체가 지정받은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과 동일한 상품이거나 동일한 세부품명 상품
- ▶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중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신청된 과제계획이 기 추진되어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동일한 경우
- 제주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정관 및 운영 규정 사업관리 지침 제10조(선정평가 제외 대상) 사전검토 결과 사업 신청자격요건 및 기타 신청 제한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선정평가에서 제외
 - ① 사전검토 결과 사업 신청자격요건 및 기타 신청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각종 보고서 제출 중 의무사항 불이행
2. 사업참여 신청자가 재단의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임대료, 관리비, 장비 시설 이용료 및 지원사업 관련 민간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단, 사업공고 마감일까지 납부완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② 「지역산업지원사업 공동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③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1.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3.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기업 (다만, 3호의 경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로 함)
 4.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인 경우
-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관련 부처의 사업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기타 부도, 휴폐업, 채부물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잠식 등

□ 근거법령 및 규정

- (재)제주테크노파크 사업관리 요령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 선정기업의 의무

-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재)제주테크노파크의 안내에 따라 협약(설명회 등)체결, 수시 및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3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기간 내 휴·폐업할 경우에도 사업 중단(사업비 회수) 등 제재조치가 가능 함

IV 평가 및 선정

□ 선정기준

○ 평가방법: 서류평가

○ 선정기준

- 기술평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의 난이도, 혁신성, 적용성, 차별성 등
- 품질평가: 품질·성능 신뢰성, 편의성, 안정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절약성 등

※ [별첨1] 기술·품질평가 면제 대상 필히 확인 후 해당 기업은 담당자 문의 必

□ 평가항목

○ 평가(컨설팅)항목

평가항목	평가(컨설팅) 주요내용	평가(진단)결과
기술심사	① 기술개발의 필요성 - 정부 정책방향 및 기술트렌드 부합 정도	적합 / 부적합
	② 기술의 난이도 -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 정도	적합 / 부적합
	③ 기술의 혁신성 - 기술의 신규성, 창의성, 독창성 정도	적합 / 부적합
	④ 기술의 적용성 - 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가치의 비중 정도	적합 / 부적합
	⑤ 기술의 차별성 - 기존 유사·동종제품에 대한 성능 우위 정도	적합 / 부적합
품질심사	- 품질·성능 신뢰성을 고려(제품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에너지 절약성, 보안성, 환경친화성 등과 관련된 인증 또는 공인시험성적서 확인. 단, 품질·성능 관련 공인 인증이 없는 신기술 물품, 서비스의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확인으로 대체)	적합 / 부적합
평가(진단)결과		적합 / 부적합

V 사업 추진절차

□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기간	주요내용
모집공고(수시)	'26. 6. ~ 예산소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육성사업(입점지원) 지원기업 모집공고 • 온라인(제주산업정보서비스) 신청·접수
↓		
선정평가(기술· 품질평가) 실시	수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서류평가(기술품질평가) 실시
↓		
결과통보	평가 후 1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에 따른 지원 여부 개별 통보
↓		
컨설팅 지원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수행계획서 접수 • 벤처나라 입점 컨설팅 지원
↓		
지원금 지급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수행보고서 검수 및 결과보고 • 컨설팅 수행에 따른 지원금 지급

※ 상기일정은 신청 규모 및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VI 신청·접수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및 방법

- (모집·신청기간) 2026. 6. 16.(화) ~ 예산소진 시까지(선착순 마감)
- (신청서교부) 제주TP 홈페이지 정보마당(기업지원정보) 및 제주산업정보서비스(JEIS)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온라인(제주산업정보서비스) 신청

온라인 접수방법

-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접속
- 대표자(또는 과제책임자) ID/Pass Word로 로그인 (필요시 회원가입)
- 상단 좌측메뉴에서 '지원사업' ⇨ '해당사업(접수중)' 클릭 ⇨ '사업신청' 클릭
- 상세화면으로 이동 ⇨ 각 항목 입력/저장 ⇨ 제출서류 업로드 ⇨ '등록' 클릭

□ 문의처

구분	문의처
지원사업 문의	Tel. 064-720-3089

VII 제출서류

□ 제출서류

- ① 사업 신청서(소정양식) 1부 (원본)
- ② 벤처기업 확인서(해당 기업) 1부 (사본)
-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1부 (사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출서류는 간소화하였으며,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자격 및 지원 제외 대상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VIII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선정)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선정)기업은 공고문 및 지침(기준), 기타 (재)제주테크노파크의 안내 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재)제주테크노파크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휴·폐업 등의 경우 협약취소, 사업 중단 (사업비 회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 함
- 선정기업은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재)제주테크노파크의 안내에 따라 수시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2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별첨

별첨1. 기술·품질평가 면제 대상

2. 벤처나라 관련 예상문의 답변서

[별첨1] 기술·품질평가 면제 대상

평가 면제 대상

구분	평가 면제 대상 품목
<p>기술·품질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8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능인증(EPC) 제품 2. 신제품(NEP) 3.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 제품 4. 신기술(NET) 제품(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녹색인증제품 6.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7. 창조경제혁신센터 BE-GOODS지원사업 선정제품 8.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품질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추천기관에서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 제품 또는 추천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해 평가 면제 여부를 벤처나라 담당과장과 협의 가능)
<p>기술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9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및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2.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3. 산업융합품목 지정 제품 4. 공공기관 개발선정품(단,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함) 5.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단,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함) 6.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7. 창업 성장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8.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추천기관에서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 제품 또는 추천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해 평가 면제 여부를 벤처나라 담당과장과 협의 가능)
<p>품질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10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수재활용인증제품(GR) 2. 환경표지(환경마크) 제품 3. 성능인증(K마크) 제품 4. 고효율에너지 인증 표시 제품 5. 자가품질보증 제품 6. 지능형로봇 품질인증(R마크) 제품 7. 보건제품 품질인증(GH) 제품 8. 부품소재 전문기업 신뢰성 인증 제품 9.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품질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추천기관에서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 제품 또는 추천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해 평가 면제 여부를 벤처나라 담당과장과 협의 가능)

[별첨2] 벤처나라 관련 예상문의 답변서

벤처나라 관련 예상문의 답변서

문의내용	답변서
‘벤처나라’는 무엇인가요?	‘벤처나라’란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운영하는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입니다.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종합쇼핑몰(나라장터) 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통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국가계약법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 및 제7의2에 따른 단가계약을 포함)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정보를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로서 수요기관이 구매를 원하는 쇼핑몰 등록 상품에 대하여 바로 납품요구 가능합니다. <u>벤처나라는 이용업체와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이용기관과 이용업체간 주문 또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오픈마켓으로서 수요기관이 구매를 원하는 벤처나라 등록 상품에 대하여 전적 및 주문(계약) 절차를 거쳐 납품요구 가능합니다.</u>
벤처나라 등록가능한 상품은 무엇인가요?	<p>관리규정 6조에 해당하는 제외대상 외 디지털가전, 컴퓨터 주변기기, 자동차공구기계, 전문장비, 건강의료, 교육용품, 시스템소프트웨어, 기타 아이디어상품 등이 등록 가능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제외한 물품 2.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에 해당하는 상품인 경우 3. 제31조에 따라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의 지정이 취소된 상품이 지정 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재추천된 경우 4. 기타 구매업무심의회에서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div>
벤처나라에 프로폴리스 제품도 등록되어 있던데 건강기능식품 등록이 가능한가요?	신청제외 목록에 포함된 음식료품은 일반적인 음식료품을 지칭합니다.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중 특허나 우수한 조달물품으로 평가를 받아 추천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벤처나라 물품 등록 전에 구매업무심의 시에 선정 혹은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을	벤처나라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이나 우수조달물품 등록이 어려운 벤처·창업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의 디딤돌 역할

문의내용	답변서
<p>진행하고 있는데요, 벤처나라에도 등록이 가능한가요?</p>	<p>을 하기 위해 운영하는 상품물로 벤처나라에 등록된 상품(등록 예정인 상품 포함)과 동일한 상품 또는 세부품명이 동일한 상품이 다수공급자계약 체결되거나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 벤처나라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p>
<p>“나라장터” 등록된 상품일 경우 “벤처나라” 등록이 가능합니까?</p>	<p>단순히 나라장터에 등록·가입하여 부여되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부여 받은 경우는 벤처나라 등록이 가능하나 나라장터 내 종합쇼핑몰인 우수조달상품,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등록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 체결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이거나 동일한 세부품명에 속하는 상품은 벤처나라 등록 대상에서 제외</p> </div>
<p>OEM방식의 기업체 등록 가능한가요? 즉 기술은 신청기관에 있고 생산을 다른 기업에서 외주형태로 진행할 경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신청이 가능한가요?</p>	<p>가능합니다. 추후 후보 추천이 완료되고 나서 조달청에서 생산제조계약서, 상품에 대한 스티커, 공장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직접생산 가능여부 확인을 진행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1. 기존 원칙은 직접 생산제조업체만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2017년 7월 1일자로 OEM생산 제조방식도 등록 가능합니다. 단, 유통, 공급 업체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기술은 본사가 보유하되 유통공급 업체에서 벤처나라 등록지정을 원하는 경우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p> <p>2. OEM생산 방식의 경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선정 통과 후 추후 생산제조계약서, 명판사진 등을 조달청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혹은 물품 등록과정에서 식별번호 부여 등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p> </div>
<p>실제 공장에서 직접생산하고 있으나 공장등록증명서가 없을 경우?</p>	<p>벤처나라 등록상품으로 지정 된 후 실제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 조달청에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장등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증명서가 없을 경우 아래 서류로 확인 가능합니다.</p> <p>※ 조달청 고시『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5조(직접생산 확인)에 따라 조달청 고시에 따르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제5조(직접생산 확인)</p> <p>①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명원(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2.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div>

문의내용	답변서
	<p>500㎡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 제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건축물관리대장(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료 지급 내역 포함) 4.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증명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직접 생산 증명서류 6. 물품제조사실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물품제조사실확인서 나. 생산공정 다. 생산시설 및 검사설비 목록 7.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8. 전기 사용실적 9. 원부자재 구입내역 10. 제3호, 제6호 다목, 제8호, 제9호 등에 대한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 서류 또는 그 부속서류 11.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각 서류는 필요에 따라 제출 요청할 수 있다. <p>② 직접생산 확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제1호 신규등록 신청과 제2호 갱신등록 신청의 경우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며 제6호 서류 내용에 대한 품명별 세부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추가적인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경우 제1항제7호에서 제10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조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2.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정보와 대조 확인, 제1항제4호에서 제10호까지의 사항은 서류 및 제조공장 설비 등과 품명별 세부기준을 대조 확인한다. <p>③ 조달청장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품명에 대해 해당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생산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p>
<p>SW나 시스템 업체는 공장이 따로 없는데 공장등록증명서 제출하여야 하나요?</p>	<p>SW의 경우 따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등록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나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발급하는 프로그램 등록부(증), 소프트웨어 사업자확인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p>

문의내용	답변서		
<p>“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신청서”의 기타항목에 관련된 한 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기타 (해당란에 √표) </td> <td> <input type="checkbox"/>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input type="checkbox"/> 신청 상품 관련 품명 제조 등록) <input type="checkbox"/> 신청 상품 물품목록번호 등록 (물품목록번호) ※ 반드시 신청상품과 관련된 제조 등록 여부 및 물품목록번호 등록 여부 체크 </td> </tr> </table> <p>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회원가입 된 기업에 부여되는 것으로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체크해주시시오. 추후 벤처나라 조달물품 등록지정이 된 후 벤처나라 쇼핑물 상품 등록 시 물품 등록이 빠르게 진행됩니다.</p>	기타 (해당란에 √표)	<input type="checkbox"/>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input type="checkbox"/> 신청 상품 관련 품명 제조 등록) <input type="checkbox"/> 신청 상품 물품목록번호 등록 (물품목록번호) ※ 반드시 신청상품과 관련된 제조 등록 여부 및 물품목록번호 등록 여부 체크
기타 (해당란에 √표)	<input type="checkbox"/>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input type="checkbox"/> 신청 상품 관련 품명 제조 등록) <input type="checkbox"/> 신청 상품 물품목록번호 등록 (물품목록번호) ※ 반드시 신청상품과 관련된 제조 등록 여부 및 물품목록번호 등록 여부 체크		
<p>특허 등록이 완료되지 않고 출원 중인 제품인 경우 서류제출은?</p>	<p>기술평가 증빙자료로 인정이 되지는 않으나 기타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평가나 조달청 심의 시 참고하여 반영되니 모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p>		
<p>창업 7년 미만 기업의 기준은?</p>	<p>설립년월일이 조달청 벤처나라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발표일 기준 산정 7년 이내 기업에 해당합니다.</p>		
<p>이미 벤처나라 등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른 상품을 등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p>	<p>기존에 진행하시던 물품 등록은 그대로 벤처나라 등록 진행하시되, 추가 다른 상품을 등록하시려고 할 때도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기술·품질평가를 받으시고 추천서를 받으신 뒤 조달청 신청이 가능합니다.</p>		
<p>벤처나라 등록 후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p>	<p>우수조달물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는 상품으로 벤처나라 등록 후 자격요건이 되면 조달청 나라장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나라장터 쇼핑물에 등록되면 벤처나라에서는 상품이 삭제됩니다.</p>		
<p>벤처나라 등록 후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p>	<p>벤처나라를 통해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또는 용역(단,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제품인 경우 5천만원 이하)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바로 주문 가능하며, ※ 관련 규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그 외 성능인증, 우수소프트웨어, 신제품(NEP), 신기술(NET),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제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은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첨부하여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 관련 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 라목</p>		
<p>벤처나라 등록 거래제한 금액이 있나요?</p>	<p>등록 혹은 거래제한 금액은 따로 없으나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을 진행 하거나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후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여야 합니다.</p>		